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4일, 권영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0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영세의원)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

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개정안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31조제6호의3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마약류 위반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유형별	계	18	10	30	7	15
	대마	-	1	4	-	1
	마약	-	1	9	-	1
	향정신성의약품	18	8	17	7	13
소속별	계	18	10	30	7	15
	국가	2	4	9	2	4
	지방	4	3	14	2	6
	교육청	10	1	3	1	4
	기타	2	2	4	2	1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검찰청 홈페이지/정보자료/통계자료/범죄분석)

다만,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도입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¹⁾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범죄의 적정한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1)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360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